

2023.07.11.(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정준모 조직국장(마트노조) 010-3071-2012

코스트코 하남점 혹서기 노동자 사망 관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마트노조 기자회견

2023년 7월 11일 (화)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살릴 수 있었다! 막을 수 있었다! 코스트코는 하남점 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져라!

오늘 유족들의 자료공개로 코스트코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온열에 의한 과다 탈수가 폐색전증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코스트코는 초기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들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부검의 기회조차 박탈해버렸다. 단순 병사로 덮기 위해 언론 인터뷰 하는 직원들을 색출한다며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따라다니면서 트라우마로 힘든 동료 사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천인공노할 짓이다.

살릴 수 있었다. 막을 수 있었다.

만약 고인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었다면,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충분히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었다면, 서서 일하는 강도를 줄이기 위해 의자를 비치하고, 폭염시 휴식 시간이 강제되었다면, 무엇보다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했을 때 그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 이번 사망은 코스트코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낳은 타살이다. 아프다고 보고해도 당장 인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누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이번 중대재해의 과실은 코스트코에 있다. 만 29세, 서른도 되지 않은 꽃다운 청년이 아프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는 전체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약속하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황망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족한 카트 인력을 메꾸기엔커녕 냉방시설 비용 절감, 인력 돌려막기 등 사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하남점장은 자숙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코스트코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다.

노동부는 이번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미 많은 증거가 코스트코의 책임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트코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한국에서만 연 매출 5.5조를 벌여가는 글로벌 대기업이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부속품 취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행태는 경종을 울리고 강력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코스트코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무 환경 개선하라!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코스트코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원 10명을 고소했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가 되지 않자 다시 항고하였다. 코스트코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한국 노동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무리하고 필요 없다고 주장하던 코스트코,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근무 환경에서 왜 사람이 죽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코스트코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단체협약 체결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돈만 주면 다인 줄 아는 천박한 코스트코의 인식이 있는 한 사고는 반복된다. 즉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발 벗고 나서 제도개선으로 약속해야 한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업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별첨1]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사망) 발생 경위

1. 재해자 기본정보

- 성명 : 김○○
- 소속 :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
- 성별 : 남
- 나이 : 만 29세
- 근속기간 : 약 4년 2개월 (입사 2019년 4월 9일)
- 주요업무 : 계산대(캐셔) (입사 ~ 2023년 6월 4일)
- 재해당시 업무 : 카트 및 주차관리(2023년 6월 5일 ~ 사망)
- 사망원인 :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발생한 폐색전증
(다리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으로 폐혈관 막힌 상태)

2. 중대재해(사망) 경과

일시	내용
19. 4. ~ 23. 6. 4.	약 4년 2개월간 계산대 업무 수행 의자 없음, 3시간 이상 연속 서서 근무
23. 6. 5. ~ 6. 19.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 수행 - 장시간 고강도 노동 폭염에 취약한 업무환경 및 회사 예방수칙 준수 미흡
6. 17.(토)	내방객 증가, 1시간 연장근로, 26.42km / 4만 3천712걸음
6. 18.(일)	22.01km / 3만 6천657걸음
21시 45분	가족 단독방에 '가슴 답답, 호흡 잘안됨' 호소 고인은 고모에게 정형외과 진료처 문의
6.19.(월)	고모에게서 정형외과 소개받음. '내일이 휴무니까 가보겠다' 답함. 17.36km / 2만 9천107걸음
12시	출근
15시경	동료에게 가슴 답답함 및 조퇴하고 싶어도 업무를 대신할 사람 없다고 호소
19시경	동료에게 가슴 답답함 다시 호소. 동료 안내로 1층 주차장과 매장사이 연결계단에서 앉아 쉬고 있는 중 잠시 후 의식 잃고 앉아 있는 상태 발견
19시 05분	다른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 받지 못함(부재중 기록)
19시 08분	119 연락. 심폐소생술 시행
19시 15분	119 도착, 응급처치
19시 29분	119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출발
19시 36분	병원 도착
21시 18분	사망

- 故김○○ 군은 입사 이래 2023년 6월 4일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에서 계산대(캐셔) 업무를 주되게 수행함.

- 2023년 6월 5일부터 카트 및 주차관리(동일점포 내) 업무로 보직 변경됨
 - 업무내용 : 주차장 환경관리, 카트전반(외곽카트 포함) 수거·정리·수리·도색 등.
 - 하남점 주차장 현황 : 총 5개 층(지상 1층 ~ 5층)
 - 1층 119대, 2층 198대, 3층 210대, 4층 226대, 5층 224대
 - 평일 1~2층 만차, 주말 5층까지 만차

- 사망 3일 전인 6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 그리고 19일 월요일 3일간 폭염상황에 그대로 노출된 채 장시간 땀흘리며 과로함.
 - 주말 내방고객 증가로 6월 17일(토), 18일(일) 업무 부하 증가.
 - 특히 17일(토)은 방문차량이 너무 많아 1시간 연장근로함
 - 스마트폰 앱에 17일에만 26.42km / 약 4만 3천712 걸음이 기록됨. 재해 직전 3일간 평균 22km를 걸은 것으로 표기됨.
 - 최고기온(별첨 기상청 하남덕풍 기준)이 17일은 최고 32.1℃, 18일은 33.3℃, 19일은 35.2℃에 달하는 폭염상황이 계속됨. 18일과 19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안전문자가 발송되었던 상황.

- 사망 전날인 6월 18일 근무종료(오후 9시) 후 9시 45분 가족단톡방에 '가슴 답답하고 호흡이 잘 안된다.' 호소함.
 - 고모에게 '요즘 등과 어깨가 아프고 가슴이 조이고 호흡 힘들 때 있다'고 호소하며, 정형외과 진료처를 문의함
 - 가족 중 아빠가 문자 보았으나 병원 마취치료 중이라 응답 못함.
 - 다음날(19일) 고모가 정형외과 소개함. '내일이 휴무니까 가보겠다' 답함.

- 사망 당일 6월 19일
 - 오후 3시경 동료직원에게 가슴이 답답해 조퇴하고 싶어도 누가 업무를 대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호소함.
 - 오후 7시경 동료직원에게 답답함 다시 호소, 동료직원이 연결계단(1층 주차장과 매장사이)에 가서 쉬고 있으라 말함. 이 동료직원이 잠시 주차장 돌아보고 오니(3분 가량 경과) 이미 의식 잃고 앉아 있는 상태였음.
 - 오후 7시 8분 119 신고 및 119상담대원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 오후 7시 15분 119 구급차 도착. 6km 인근 응급실(0000대병원)로 이송됨.
 - 오후 7시 5분경 다른 직원이 전화했으나 받지 못함(부재중 표시)을 토대로 의식을 잃은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음. (오후 7시~7시 8분)

- 오후 9시 18분 담당의사 사망 선고함.

6월 19일 최초 사망원인 진단 : 폐색전증

6월 23일 최후 사망원인 진단 : 폐색전증,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

※재해 당일 응급실 동행 회사 관리자는 온열환경과 카트관리 업무 등 응급실에 이송된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코스트코에서 일하는 직원이란 설명뿐이어서 담당의사는 최초 사망진단을 '폐색전증'으로만 표기함. 이후 유족측의 설명(업무 및 업무환경)을 듣고 사망진단서 재발급.

3. 사망원인의 업무 관련성

가. 계산대 업무

○ 고인은 올해 6월 4일까지 약 4년 2개월간 장시간 서서 계산대 업무를 수행함.

⇒ 혈전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

○ 타 대형마트에 비해 장시간 고정된 자세의 업무 수행.

① 코스트코의 계산대 연속근무 시간 : 3시간 이상

⇒ 타 대형마트는 계산대 한 곳에서 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단협이나 업무매뉴얼 등으로 정하고 있음.

② 코스트코에서는 계산대에 근무자용 의자가 비치되어있지 않음

⇒ 타 대형마트는 계산대에 근무자용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앉은 채로 일하는 것이 가능. 서거나 앉은 상태의 업무 자세가 변경 가능함.

나.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

고인은 올해 6월 5일 ~ 6월 19일 동안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전 업무인 계산대보다 열악한 환경임.

○ 첫째,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도 계속 서서 일해야 하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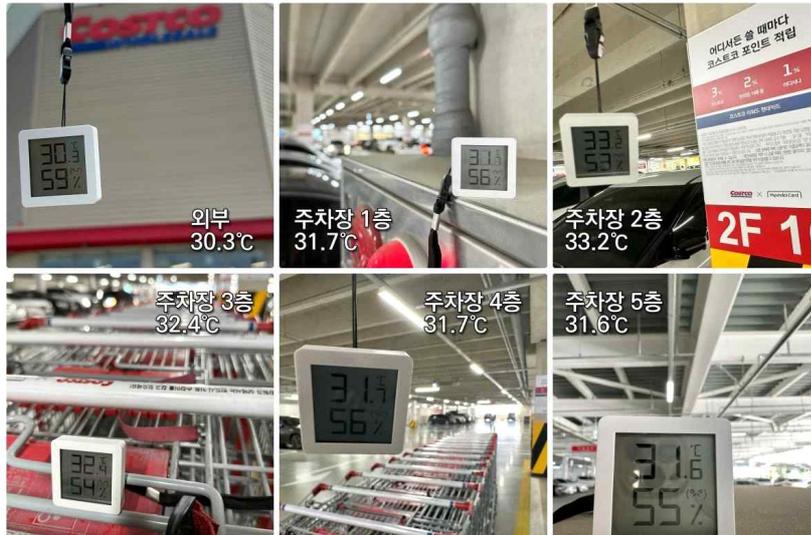
① 업무시간 중 앉아 쉴 곳 없음.

② 해당 업무 직원의 휴게실은 5층에 위치하고 등반의자 1개 비치.

○ 둘째, 폭염상황에서 체온관리 힘든 업무환경

① 지상주차장 중 5층을 제외한 1~4층은 매장 입구면을 제외한 'ㄷ' 자 3면은 일부 공간만 뚫려 있는 전형적인 건물주차장 형태로 열기가 원활히 배출되기 힘든 구조임.

② 차량 엔진과 폭염에 달궈진 차량 표면 열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높았을 것.



7월 8일(토) 오후 코스트코 하남점 층별 주차장 내부 온도 측정치 : 방문 당시 만차 상태인 2층의 경우 가장 온도가 높았음

③ 주차장 내 열기를 식혀줄 냉방장치는 없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밀폐 공간이 아니라 냉방효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으로 추정).

④ 주차장내 천장 공기순환장치 역시 절전을 이유로 꺼둘 때가 많았다고 함.

⑤ 완전한 실내 공간이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찜통 수준의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국소냉방장치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

cf. 인근 스타필드 주차장엔 산업용에어컨(에어렉스) 설치되어 있음.



에어렉스 (출처: www.airrex.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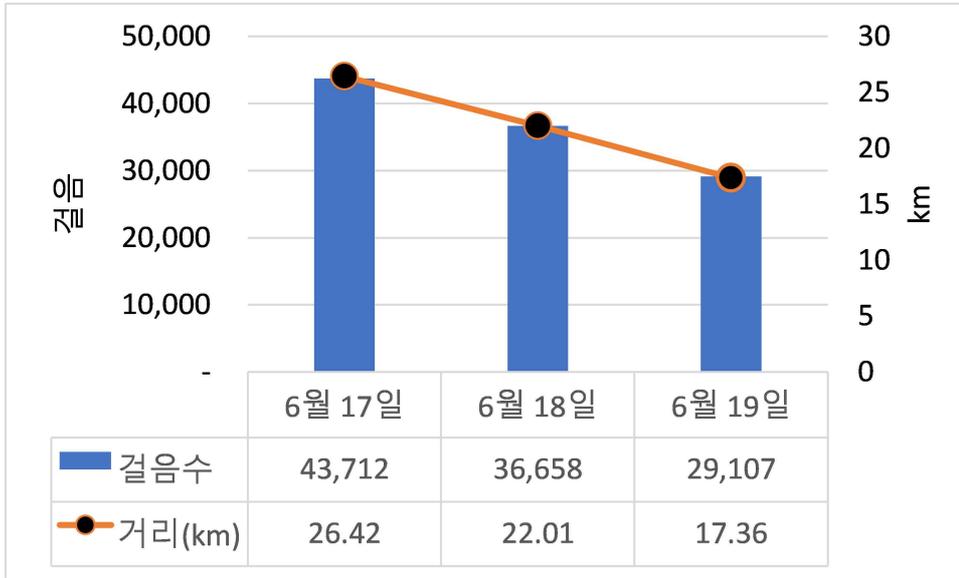
⑥ 폭염시기 적절한 휴식과 시원한 물을 섭취하기 힘든 조건

- 고인의 재해현장인 1층 주차장에서 물이 있는 5층 휴게실까지 왕복 이동시간 10분가량 소요.

- 폭염 시 10~15분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무용지물
- 폭염상황에서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연속근무를 했음이 근무표(별첨)에 기록됨.(16일: 3시간 15분 / 17일: 3시간 / 18일: 2시간 45)
- 폭염특보가 발효된 18일 낮 휴게시간은 30분(기존 15분) 이지만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 아닌 15분씩 2회 있는 휴게시간을 붙여서 쓴 것. 때문에 열기가 가시지 않은 저녁식사 이후 시간에는 휴식 없이 3시간 30분 업무수행

	6/16(금)	6/17(토)	6/18(일)	6/19(월)			
12:00	업무	업무	업무				
12:15							
12:30							
12:45							
13:00							
13:15							
13:30							
13:45							
14:00							
14:15							
14:30							
14:45					휴게		
15:00					휴게		
15:15				휴게			
15:30	업무	업무	업무				
15:45							
16:00							
16:15							
16:30				식사			
16:45				식사			
17:00				식사			
17:15				식사			
17:30				업무	업무	업무	
17:45							
18:00							
18:15							
18:30							
18:45							
19:00	휴게						
19:15		휴게					
19:30	업무	업무	업무				
19:45							
20:00							
20:15							
20:30							
20:45							
21:00					연장		
21:15					(근무표		
21:30					미표기)		
21:45							
22:00							

부서 근무표(별첨) 중 고인의 근무스케줄 발췌



고인의 건강앱 기록 그래프로 재구성 : 사망 직전 고온의 환경속에서 하루 평균 3만 6천보, 평균 22km를 걸으며 일함.

○ 셋째,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과로누적, 휴식·피난 힘든 환경

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부족 문제를 신규직원 채용이 아닌 ‘콤보’(타부서 인력을 일정 시간 투입후 원대복귀) 방식으로 대응해 옴.

* 매출규모 비슷한 상봉점과 비교

	하남점	상봉점
매출(6/15~19)	156억 원	153억 원
주차장	5개 층	4개 층
카트관리 인원	11명	17명
계산대 인원	40명	60여명

* 부서 근무표(별첨) 상 일별 근무인원

6월 16일	17일	18일	19일(사망일)
8명	9명	8명	7명

② 내부 안전수칙(취업규칙)상 카트는 한 번에 6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남점은 일손이 달려 ‘한번에 20여대를 끌어야 하는 상황’ 관행화

“나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까요?”

10.0

안전 수칙

10.1 일반안전수칙

참조: 본 지침 및 위험관리 매뉴얼에 명시된 안전관리 규정 외에도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코스트코의 모든 방침, 절차, 규칙 및 사원훈련 프로그램에 통합 반영되어 있습니다.

- (1) 코스트코의 모든 안전규칙 준수는 물론,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해야 합니다.
- (2)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 또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알고 있지 못한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 (3) 위험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관행, 그리고 사고 또는 부상은 수퍼바이저 또는 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하며,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크거나 또는 운반이 어려운 적재물의 경우, 반드시 다른 사원의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 (12) 작업에 적합한 연장과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개인 보호용 장비(PPE)를 사용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1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작업은 외부 계약자가 하도록 합니다.
 - (14) 쇼핑카트는 한번에 6대 이상을 끌어서는 안됩니다. 카트 관리자는 카트용 로프를 사용하고 밝은 색의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끼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매장의 오픈 어부와 상관없이 주차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15)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16) 일반적으로 모든 장비/기계에 대한 청소, 작업, 수리 또는 보관시에는 전기 플러그를 빼놓아야 합니다. (플러그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예) 포장기(the wrapping machine)의 포장비닐 변경 시
 - (17) 반드시 적절한 코스트코 장비 사용교육이나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원만이 동력 기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 (18) 승차용이 아닌 동력 기기에는 절대 올라타서는 안됩니다.

코스트코 취업규칙 : 10.1 일반안전수칙 (14)에 쇼핑카트를 한번에 6대 이상 끌지 않도록 규정



코스트코 하남점 재해발생 직후 카트업무 모습 - 20여 대의 카트를 카트용 로프로 묶어 한 사람이 끌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가 된 후 규정대로 6대씩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③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대체인력 없다 보니, 급병 발병 상황에서도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갈 예정’, ‘조퇴하고 싶지만 억지로 참는 상황’이 야기되어, 결국 폐색전증 발병·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4. 사망원인과 지병 존재 여부

- 평균 수준 키와 몸무게, 고혈압·외상·수술 등 혈전 발생인자 해당없음. (2020년 ~ 2023년 최근 4년 건강검진결과)
- 사망진단 의사 견해
 - 젊은 사람의 경우 혈전이 생기는 경우 드물고 혈전이 생겨도 갑자기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

- 고인의 경우 다리에 다량의 혈전 발생한 상태. 특수한 상황(온열)으로 인해 땀이 심하게 배출되고, 과도한 탈수로 혈액이 걸쭉해져 혈전 발생하고 갑자기 폐색전증이 유발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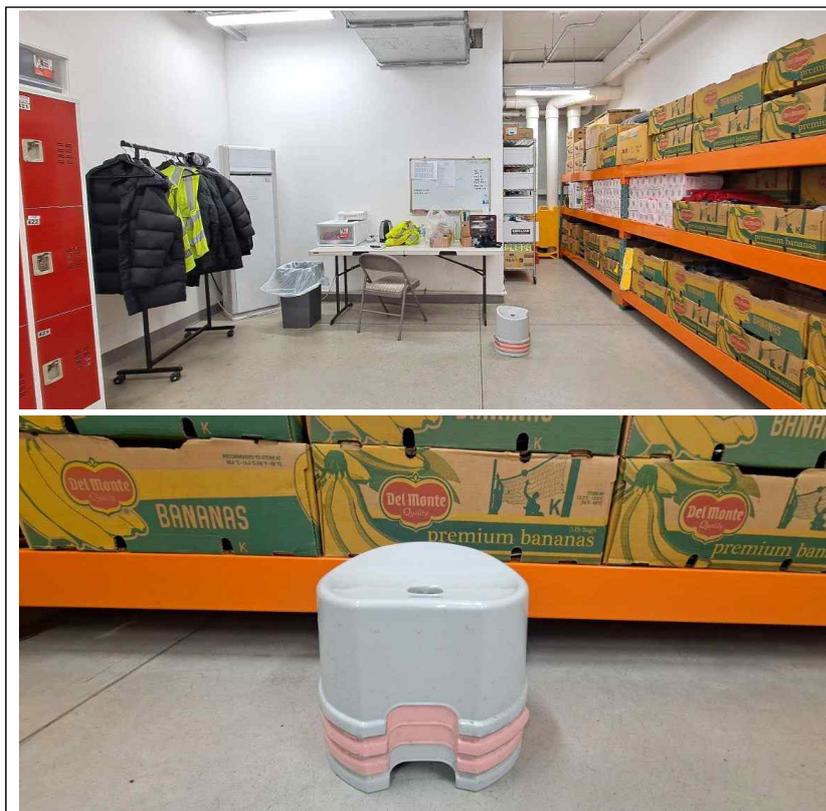
5. 코스트코 사측의 재해예방 조치 및 재해대응 양태

가. 관계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미준수

(1) 휴게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달

- ✓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고인이 근무했던 부서 휴게실(5층)

- 1층 주차장에서 5층 휴게실까지 왕복 10분, 휴게시간 15분중 2/3소요.
- 등받이 의자 1개와 쪼그려 앉는 욱실의자 4개 뿐이었다.
- 휴게실 공간 일부는 상품 적치가 되어있다.

(2) 자체 안전수칙(취업규칙) 미준수

- 쇼핑카트는 한번에 6개 이상 끌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20여대 카트를 끌고 있는 실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음.

(3) 폭염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미준수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주차장) 내 온도 관리를 위한 조치 부재

-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 ⇒ 주차장 공간 어디에도 온·습도계 존재하지 않음

- ✓ 더운 공기가 정제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 주차장 천장 공기순환장치 가동 미흡(미운영 또는 과도한 절전), 그 외 냉방장치 부재.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 폭염특보 상황이었던 당시 휴게실(5층)을 제외한 주차장 1~4층에 ‘시원한 물’ 별도로 비치되지 않았음.

- ⇒ 재해 발생 다음날 비치(사망 당일까지 5층 휴게실에 올라가야 물섭취 가능)



사망 다음날인 6월 20일 등장한 아이스박스, 주차장 한 구석에 폐지수거함과 함께 놓여있음.

- 폭염시 규칙적 휴식 부여 및 작업 최소화

- ✓ 폭염특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부여

- ⇒ 부서 근무표 확인 결과 정규 휴식시간 외에 추가 휴식 없음

- ⇒ 사망 전날(18일) 낮 휴게시간 30분(기존 15분) 부여했지만 추가 휴식시간이 아닌 저녁 휴게시간 15분을 앞당겨 사용한 것. 열기가 남아있는 저녁 업무가 더 길어지는 결과 초래함.

(4) 재해 이후 조치사항

- 6.20일 2층에 아이스박스 비치 및 휴식시간 15분 추가제공
- 6.21일 식염포도당 제공
- 6.24일 아이스박스 비치 전층확대 등
- 5층 휴게실 의자 비치
- 쇼핑카트 운반 자체규정 이행 관리

나. 유족과 산재처리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코스트코 태도

(1)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

- 유족은 사망 다음날(6/20) 사측에 산재처리 협조 요청에 인사담당자는 ‘산재 처리 어렵다’는 입장 밝힘
 - ⇒ ‘산재’가 아닌 ‘개인’ 병사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 6월 26일 유족은 점장에게 CCTV 영상 복사본 요구했으나 거절됨
 - ⇒ 경찰 중재 하에 ①김동호 군 이외 인물 모자이크 처리 ②모자이크 처리비용은 유족측 부담 등을 전제로 제공하기로 협의됨.
 - ⇒ 6월 27일 오전 점장이 직접 ‘CCTV 사본 제공불가’ 유선통보
 - : 본사 회의 거쳐야 한다는 이유, 본사 결론 시점에 대해서 점장도 알 수 없다고 답함.
 - ⇒ 이후 CCTV 제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 확인 필요.
- 6월 26일 유족은 점장에게 근무기록지도 요구에 점장은 그런것 자체가 없다고 답변
 - ⇒ 출퇴근 및 식사시간 기록된 ‘사원증 센싱 기록지’만 부모 내방시 제공가능 하다는 입장 밝힘.
 - :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재해 당시 및 이전 근무 양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 ⇒ ‘근무표’ 존재 여부에 대하여 문자 ‘확인해 보겠다’라고 정확한 답변 회피.
 - : 유족은 별도 경로를 통해 근무표(별첨) 존재 확인하고, 일부 내용 확보함.

(2) 초동대처 미흡 및 산재은폐 의혹

- 재해 발생 당시 초동대처에 대한 엇갈린 증언들 존재.
- 이를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CCTV 제공 및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
- 사망진단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19시 36분 병원에 도착한 코스트코 관리자급 직원으로부터 ‘코스트코 직원’이라고만 들어 ‘온열’에 관해서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함.

- : 업무 연관성을 배제시키고 개인 병사로 유도하며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방해
- : 정확한 사인 진단을 위한 유족의 부검 기회를 박탈

[별첨.1] 부서 근무표

- 6월 16일(금)

	1층	2층	3층	4층	카트		식사	휴식	6월 16(금)
10:00	A (7-16) + B (8-17)						10:00		
10:15	B						10:15	A (1)	HEAD 8명
10:30	A						10:30	B (1)	
10:45		B					10:45		A 7-16
11:00	C (11-20)				A		11:00		B 8-17
11:15							11:15		C 11-20
11:30							11:30		교인 12-21
11:45							11:45		D 12-21
12:00	교인 (12-21)	D (12-21)	C		B		12:00	A	E 14-23
12:15							12:15		F 15-24
12:30							12:30		G 15-24
12:45							12:45		
13:00	C	교인	D		A		13:00	B	<식사시간>
13:15							13:15		중식 11:00~ 14:20
13:30							13:30		석식 16:30~ 18:50
13:45							13:45		
14:00	E (14-23)	D	B		교인 A		14:00	C	
14:15							14:15		
14:30							14:30		
14:45							14:45		
15:00	F (15-24)	G (15-24)	E		교인 A B		15:00	C (1) D (1)	
15:15					D A		15:15	C 까지	교인 (1) B (2)
15:30					D B 교인		15:30	C 까지	A (2)
15:45			D		B 교인 A		15:45	C 까지	E (1)
16:00		B			교인 C E		16:00		G (1)
16:15	G						16:15		F (1)
16:30			F		C E		16:30	교인 D	
16:45							16:45		
17:00		C			E		17:00		
17:15							17:15		
17:30	교인		D		F G		17:30	E	
17:45							17:45		
18:00					G		18:00	F	
18:15							18:15		
18:30	E	D	X		교인		18:30	G	C (2)
18:45			C				18:45		
19:00					F		19:00		교인 (2)
19:15		교인					19:15		D (2)
19:30	G				D		19:30		E (2) F (2)
19:45	E				D F		19:45		G (2)
20:00			G				20:00		

- 휴식시간에 표기된 괄호 '(1)' '(2)' 표기 : (1) 첫 번째 15분 휴식 / (2) 두 번째 15분 휴식

- 6월 17일(토)

	1층	2층	3층	4층	카트		식사	휴식	6월 17(토)
10:00	A (7-16) + H (8-17)						10:00		
10:15							10:15		HEAD 9명
10:30	A						10:30	H (1)	
10:45	H						10:45	A (1)	A 7-16
11:00	B (11-20)	H			A		11:00		H 8-17
11:15							11:15		B 11-20
11:30							11:30		C 12-21
11:45							11:45		고인 12-21
12:00	C (12-21)	고인 (12-21)	H		B		12:00	A	I 13-22
12:15							12:15		D 14-23
12:30							12:30		F 15-24
12:45							12:45		G 15-24
13:00	I (13-22)	C	고인	B	A		13:00	H	
13:15							13:15		
13:30							13:30		<식사시간>
13:45							13:45		중식 11:00- 14:20
14:00	H	D (14-23)	I	고인	A C		14:00	B	석식 16:30- 18:50
14:15							14:15		
14:30							14:30		
14:45							14:45		
15:00	F (15-24)	G (15-24)	D	A	C H B		15:00	I (1) 고인 (1)	
15:15					B 고인		15:15	I 파자 C (1) H (2)	
15:30			H		B 고인 C		15:30	I 파자 D (1)	
15:45				D	고인 C		15:45	I 파자 B (1) A (2)	
16:00	B				고인 C I		16:00	F (1)	
16:15		F					16:15		G (1)
16:30			G		I H		16:30	C 고인	
16:45							16:45		
17:00	I	D		B	F		17:00		
17:15							17:15		
17:30	C		고인		F G		17:30	I	
17:45							17:45		
18:00		B		X			18:00	D	
18:15							18:15		
18:30	I		C		고인		18:30	F G	
18:45							18:45		
19:00		D		X			19:00	B (2)	
19:15					B		19:15	고인 (2)	
19:30		고인	G	F			19:30	C (2) D (2)	
19:45	C			D			19:45	I (2) F (2)	
20:00			I		F		20:00	G (2)	

- 6월 18일(일)

	1층	2층	3층	4층	카트	일	식사	휴식	비고	일2	0	1
10:00	B (8-17)				H (7-16)	10:00				H 7-16	0	06월 18일
10:15						10:15		B (1)		B 8-17	0	
10:30						10:30		H (1)		C 11-20	0	
10:45						10:45				I 12-21	0	
11:00	C (11-20)	B			H	11:00				고인 12-21	0	
11:15						11:15				D 13-22	0	
11:30						11:30				E 14-23	0	
11:45						11:45				J 15-0	0	
12:00	I (12-21)	고인 (12-21)	C		B	12:00	H			G 15-0	0	
12:15						12:15						
12:30						12:30						
12:45						12:45						
13:00	고인	D (13-22)	I	H	C	13:00	B					
13:15						13:15				중식(11-14:20)		
13:30						13:30				석식(16:30-18:50)		
13:45						13:45						
14:00	E (14-23)	B	H	D	고인/ I	14:00	C					
14:15					고인/ I	14:15						
14:30					고인/ I	14:30						
14:45					I	14:45			고인(1)			
15:00	G (15-0)	J (15-0)	E	H	B / I	15:00		C (1)/ D (1)	고인(2)			
15:15					B / I /	15:15		C (2)/ D (2)	고인파자			
15:30					B / C / D	15:30		I (1)	고인파자			
15:45				B	I / C / D	15:45		H (2)	고인파자			
16:00	J	D	C	B	I / G 고인	16:00		E (1)				
16:15				B	G / 고인	16:15		I (2)/ E (2)				
16:30				B	E / G	16:30	고인/ I					
16:45				G	E	16:45		B (2)				
17:00	C	G	D	X	J	17:00	E					
17:15			D	X		17:15						
17:30			고인	I		17:30	D					
17:45			고인	I		17:45						
18:00	I	고인	J	E	C	18:00	G					
18:15			J			18:15						
18:30			D			18:30	J					
18:45			D			18:45						
19:00	고인	D	I	C	E	19:00		G (1)				
19:15					E / G	19:15		G (2)				
19:30					E / G	19:30		J (1)				
19:45					E / G	19:45		J (2)				
20:00	E	고인	D	I	G / J	20:00						

[별첨.2]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록번호 : [redacted]
연번호 : [redacted]

원본대조필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1	성명	김 [redacted]	2	성별	남	3	주민등록번호	93 [redacted]	
4	실제생년월일	1993년 [redacted]월 [redacted]일		5	직업	[redacted]			
6	주소	경기 [redacted]							
7	발병 일시	2023년 06월 19일 19시 5분(24시간제에 따름)							
8	사망 일시	2023년 06월 19일 21시 18분(24시간제에 따름)							
9	사망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redacted] 병원						
		장소	의료기관						
10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가) 직접사인	폐색전증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1일			
		(나)	(가)의 원인	과도한 말수		1일			
		(다)	(나)의 원인	온열		1일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11	사망의 종류	병사							
12	사고 종류					의도성	여부		
	사고발생일시	[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일 [redacted]시 [redacted]분(24시간제에 따름)							
외인사사항	사고발생장소	주소	[redacted]						
		장소	[redacted]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검안)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redacted]

명칭 : [redacted]

의사 면허번호 : [redacted] 의사 [redacted] (인) [redacted]

* 본원 직인이 없을 시 무효임
* 제증명서류는 직인날인 후 공적 서류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환불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주의: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첨.3] 관계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u>폭염에 노출되는 장소</u> 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u>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u>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u>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u> :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small>※ (적용범위)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small>	
그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조치 이행 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② 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③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물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① 근무시간대 조정 ②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④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휴식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2023-06-01) : '실내 작업장'에 대한 내용 추가됨

[별첨] 기자회견 식순

순서	주제 및 내용	발언자	비고
취지발언	사건 경과 및 기자회견 취지, 노동조합 요구안	마트산업노조 김성익 사무처장	-
유족발언	故김○○ 노동자 유가족 입장 발표	코스트코 하남점 故김○○ 노동자 유가족 (부친 김길성 님)	대독
규탄발언	중대재해 사업장 코스트코 규탄, 국회 및 정부 역할 촉구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
연대발언1	지지발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
연대발언2	지지발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여자	자료 대체 가능